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

* 별첨 1 : UW 할인할증 계수 (중대산업재해)

구분	내 용	응답	응답
관련법 위반	최근 3년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소송 여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계류중인 소송 여부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사망 여부	최근 3년내 산업재해 관련 사망자 여부 (3년 누적기준)	없음	
		3명 이하	
		10명 이하	
		11명 이상	
산재 부상	최근 3년내 산업재해 관련 부상 인원 여부 (3년 누적기준)	10명 이하	
		30명 이하	
		50명 이하	
		51명 이상	
산재 질병	최근 3년내 산업재해 관련 질병 인원 여부 (3년 누적기준)	5명 이하	
		10명 이하	
		20명 이하	
		21명 이상	
근로자 연령	전체 근로자 중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40% 이상	
근로성숙도(1년)	전체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로자 비중	10% 미만	
		15% 미만	
		20% 미만	
		20% 이상	
직원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교육시간	3배 이상	
		2배 이상	
		1배 초과	
		1배 이하	
외주 안전교육	하청직원 작업 전 (1) 안전교육 실시, (2) 점검표 작성	실시○, 작성○	
		실시○, 작성×	
		실시×, 작성○	
		실시×, 작성×	
야간야외작업	자율점검표 작성 및 긍정 비중	긍정비율 90% 이상	
		긍정비율 70% 이상	
		긍정비율 50% 이상	
		긍정비율 50% 미만	
하청 근로자 비중	전체 근로자 대비 외부하청 근로자 비중	10% 미만	
		20% 미만	
		30% 미만	
		30% 이상	
안전보건점검횟수	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점검*	1년에 4회 이상	
		1년에 3회	
		1년에 2회	
		1년에 1회	

* 자율점검표 안내

- 고용노동부 제공 자율점검표를 우선 적용하고, 해당 업종은 업종우선
 - 폐기물처리업 자율점검표
 - 창고 및 운수업 자율점검표
 - 건설업 자율점검표
 -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 기업자체 자율점검표는 평가항목이 50개 이상인 것만 인정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 Y/N 등 최소 평가기준 충족 필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

* 별첨 2 : UW 할인할증 계수 (중대시민재해)

구분	내 용	응답	응답
관련법 위반	최근 3년내 관련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소송 여부	현재 관련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계류중인 소송 여부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사망 여부	최근 3년내 시민재해 관련 사망자 여부	없음	
		3명 이하	
		10명 이하	
		11명 이상	
시민 부상	최근 3년내 시민재해 관련 부상 인원 여부	10명 이하	
		30명 이하	
		50명 이하	
		51명 이상	
시민 질병	최근 3년내 시민재해 관련 질병 인원 여부	5명 이하	
		10명 이하	
		20명 이하	
		21명 이상	
조직 및 인원	중대시민재해를 전담하는 조직 여부	전담부서, 전담직원 ○	
		겸직부서, 전담직원 ○	
		겸직부서, 겸직직원 ○	
		부서배정 /직원배정없음	
안전보건점검횟수	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점검*	1년에 4회 이상	
		1년에 3회	
		1년에 2회	
		1년에 1회	
모의훈련	응급사태 매뉴얼 보유 및 모의 훈련 실시	매뉴얼 X, 모의훈련 ○	
		매뉴얼 ○, 모의훈련 ○	
		매뉴얼 X, 모의훈련 X	

자율점검표 안내

1. 공공기관에서 만든 안전관리 점검표를 우선 적용

- 환경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원료, 제조물) 점검표
- 국토교통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점검표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세부점검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제 10호 서식
- 다중이용업소 실내공기질 점검표
- 고용노동부 제공, 자율점검표
- 폐기물처리업 자율점검표
- 창고 및 운수업 자율점검표
- 건설업 자율점검표
-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2. 기업자체 자율점검표는 평가항목이 50개 이상인 것만 인정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 Y/N 등 최소 평가기준 충족 필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험 목적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었을 때 회사는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